

인천광역시검단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제 12 호

2026. 8. 26.(수)

선	기관위원장
람	

차 례

고 시

○인천광역시검단구 고시 제22호	도로명주소 고시	1
○인천광역시검단구 고시 제23호	도로구간 변경 고시	3
○인천광역시검단구 보건소 고시 제2호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5

공 고

○인천광역시검단구 공고 제203호	등록 공인 공고	7
--------------------	----------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와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8. 26.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 고시내용 : 총3건(건물번호 부여 3건)

지번주소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새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유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고시일 (효력발생일)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별 지 참 조)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토지정보과 (☎ 726-7321)에 문의 또는
검단구청(www.geomdan.go.kr) 및 도로명주소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효력발생일(2026년 8월 26일)부터 법정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공부의 주소는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서 직권으로 정정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 신청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도로명은 해당 지역과 도로의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행정안전부 장관이 부여합니다.
- 건물번호는 도로의 시점부터 종점까지 일정 간격으로 나누어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를 부여합니다.

[붙임] 고시목록

연번	구분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주소 부여사유	고시일자	도로명 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1	건물번호 부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불로동 979-5	인천광역시 검단구 동화사로 82 (불로동)	신축	20260826	20200420	갈산과 목지를 잇는 고개 아래 골의 이름을 따 명명
2	건물번호 부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당하동 1235-6	인천광역시 검단구 이음4로 16 (당하동)	신축	20260826	20200420	'서로를 이음'에서 착안. 신도시의 동서를 잇는 네번째 도로
3	건물번호 부여	인천광역시 검단구 오류동 434-502, 434-503	인천광역시 검단구 원당대로206번길 32 (오류동)	신축	20260826	20081231	원당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6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8조(도로명 등의 변경 및 폐지)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도로명 등의 고시 및 고지)에 따라 도로구간 변경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8. 26.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1. 고 시 일 : 2026.8.26.(수)
2. 효력방법 : 홈페이지 및 구보 게시
3. 고시대상 : 1건(붙임 조서 참고 :주도로 1건)
4. 고시내용 :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주민 의견수렴,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및 주소사용자의 서면동의를 생략할 수 있음.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032-726-73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현황도

[붙임] 도로구간 변경 조서 및 현황도

○ 도로구간 변경(연장) 조서

연번	구분	관할 구역	도로 위계	도로명	도로구간				기초 간격 (m)	기초번호		중심 선	변경사유
					기점	종점	도로 길이 (m)	폭 (m)		시작	끝		
1	변경 전	당하동	길	독정로78번길	당하동 1344	당하동 772-7	255	16	20	1	26	도면	도로구간 연장
	변경 후	당하동	길	독정로78번길	당하동 1344	당하동 765-48	447	16	20	1	46	참조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주민 의견수렴, 주소정보위원회의 심의, 주소사용자의 서면동의를 생략할 수 있음.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고시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공동주택 금연구역 지정 신청 건에 대하여 아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026. 8. 26.

인천광역시검단구보건소장

1. 지정취지

공동주택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아파트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여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2. 지정내용

가. 신검단중앙역 금강펜테리움 센트럴파크

- 1) 공동주택 소재지 : 인천광역시 검단구 동화시로 97
- 2) 금연구역 지정번호 : 제 48호
- 3) 금연구역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4) 금연구역 지정일자 : 2026년 8월 26일

나. 아라역 금강펜테리움 더 시글로 2차 아파트

- 1) 공동주택 소재지 : 인천광역시 검단구 원당대로 938(9401~9403동)
- 2) 금연구역 지정번호 : 제 49호
- 3) 금연구역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4) 금연구역 지정일자 : 2026년 8월 26일

다. 롯데캐슬 넥스티엘

- 1) 공동주택 소재지 : 인천광역시 검단구 이음4로 71
- 2) 금연구역 지정번호 : 제 50호
- 3) 금연구역 지정범위 :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 4) 금연구역 지정일자 : 2026년 8월 26일

3. 금연구역 내 흡연단속

- 단속 개시일 : 2026년 11월 26일부터
- 과태료 금액 : 5만원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보건소 건강증진과(☎032-718-225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 공인 공고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등록한 공인 및 전자이미지 공인을 같은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8. 26.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1. 공인 등록 사유: 2026년도 제1차 조직개편에 따른 공인 등록
2. 공인 등록일: 2026. 8. 19.(수)
3. 등록 공인명 및 인영

연번	공 인 명	인영	규격(cm)	비 고
1	인천광역시검단구 혁신전략실분임징수관인		2.0cm x 2.0cm	
2	인천광역시검단구 혁신전략실분임재무관인		2.0cm x 2.0cm	
3	인천광역시검단구 혁신전략실물품운용관인		2.0cm x 2.0cm	
4	인천광역시검단구 혁신전략실일상경비출납원인		1.8cm x 1.8cm	
5	인천광역시검단구 혁신전략실분임물품출납원인		1.8cm x 1.8cm	